

『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「구미시 시세 기본조례」를 현행 법령과 일치되게 개정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준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타 지역에서 관내 자동차를 이전·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).
-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세목 일부를 조정함(안 제7조).
- 상위법의 조례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재정비함(법조항 축소 조정 50조→9조).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 - 「지방세법 시행령」, 「자동차등록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「구미시 시세 기본조례」를 현행 법령과 일치되게 개정하고, 행정 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4조에서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호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, 해당 자동차의 이전·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7조에서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의 범위를 기존 ‘면허분등록면허세, 균등분주민세,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’에서 ‘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, 재산세,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’로 변경하였음.
- 아울러,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 50개 조문에서 9개 조문으로 축소하는 등 상위법에서 규정한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재정비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
「구미시 시세 기본조례」를 현행 법령과 일치되게 개정하고,

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
제출된 안건으로
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
하다고 사료됨.